

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의 지급을 종전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30일을 한도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수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5월 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김 대 환
노동부장관

●法律 第7566號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

勤勞基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勤勞基準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5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중

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보호휴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 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에 따른 휴가중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국가가 산전후 휴가급여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5월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김 대 환
노동부장관

○法律 第7567號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1년”을 “6월”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